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44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윤준병 · 김승원 · 이정문
김원이 · 김 윤 · 전용기
문대림 · 박희승 · 안호영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육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

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벌꿀”을 “꿀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2) 설탕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육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제5조제2항제10호 중 “생산 및”을 “및 설탕꿀 생산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을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설탕꿀의 거짓표시 금지 등) ① 제2조제1호가목 중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탕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설탕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벌꿀로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벌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벌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u>벌꿀</u> <u><신 설></u> <u><신 설></u> 나. (생략) 2. 3. (생략)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 -----. 1. ----- ----- ----- -----. 가. ----- ----- <u>꿀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꿀</u> 1) <u>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u> 2) <u>설탕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육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u> 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생 략)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 1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 9. (현행과 같음)
10. -----및 설탕꿀 생산과-----

11.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
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
금액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
·가공·유통·판매 사업 현
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
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실시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

제6조의2(설탕꿀의 거짓표시 금
지 등) ① 제2조제1호가목 중
설탕꿀을 생산·가공·유통·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탕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
위

2. 설탕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

3. 설탕꿀을 벌꿀에 혼합하여
벌꿀로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u>벌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 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 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벌 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제20조(과태료)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설탕꿀을 생산· 가공·유통·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